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8.(금) 06:00 < 9.8.(금) 석간 > 배포 2023. 9. 8.(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국민 의견 접수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장관회의(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 8.(금)~10. 4.(수)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누리집(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 FTA상품과 오혜원 사무관(hwn425@korea.kr)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윤철희 사무관(koreaipef@korea.kr)
통상분쟁대응과 곽슬기 사무관(skkwak@korea.kr)

붙임 1. IPEF 공급망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2. IPEF 공급망 협정 조항별 주요 내용
3. IPEF 관련 주요 참고사항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	책임자	과 장	전동욱	(044-203-5790)
			담당자	사무관	오혜원	(044-203-5795)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 총괄 >	책임자	팀 장	김이경	(044-203-5735)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739)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담당자	사무관	곽슬기	(044-203-59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IPEF 공급망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1. 역내 최대 경제블록의 협력체계 구축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4개국이 참여하는 GDP 기준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으로서,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니 등)과 기술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 아세안 등 IPEF 14개 참여국은 전세계 GDP의 40.9%를 차지('20년 기준)

2.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위기시 가동할 수 있는 긴급협력망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제7조). 예를 들어, 우리 경제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5일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기업 매칭, 공동조달, 대체 선적경로 및 항공경로 발굴, 신속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제12조3항).

* 우리의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상회('22년, 1천만불 이상)

3. 평시에도 공급망 협력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기여

IPEF 각 참여국은 각자의 국가안보, 공중보건, 수입집중도, 대체수입선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와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와 협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제10조). 또한, 각국은 EWS(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의 수입의존도, 가격, 교역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제11조). 3개국 이상의 참여국이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이 있을 경우, 행동계획팀(Action Plan Team)을 설치하여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6조13항). 예를 들어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 수입에 의존('22년)

4.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 상호호혜적 공급망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협정에 따르면 참여국 정부는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하였다(제3조1항). 아울러, 필요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합의사항을 근거로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외 및 면제 관련 세부 정보를 요청하고(제4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 60일내 양자 협의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제19조). 과거에는 특정국의 정부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에 비하여,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IPEF 공급망 협정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1조)	•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등 용어 정의 *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등에 핵심적인 상품과 필수 서비스 공급 분야 **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중간재, 제품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제2조)	•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 • 항구, 물류거점, 도로 및 철도의 개발 등 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 디지털 표준 협력, 공동 R&D 발굴, 순환경제 촉진 • 중소기업의 공급망 취약성 식별 및 공급처 다변화 지원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동수행 (제3조)	•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장벽 최소화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연락창구 설치 및 유지 • 부패가능 상품 신속반출 및 물류 인프라·통관 절차 개선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규제 투명성 증진 (제4조)	• IPEF 공급망 관련 법·규제 공표 및 요청시 적용가능한 예외·면제 관련 세부사항 포함한 공공정보 제공 •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제공 등
근로자 역할 강화 (제5조)	•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관련 숙련 근로자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 노동권 증진 및 자국 노동법 집행 촉진 • 노동권 관련 정책·조치 마련시 노조 등 의견 수렴
공급망 위원회 (제6조)	• 각국 협정문 이행 노력 보고서 검토 및 논의 • 핵심분야·주요상품 관련 정책·조치 모범사례 발굴, 공급망 협력 논의 • 최소 3개국 이상이 통보한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한 행동계획팀 (Action Plan Team) 설치, 각 행동계획팀이 마련한 행동계획* 검토 * (예) 공급원 다변화, 물류 병목현상 완화, 투자 프로젝트 공동 자금 조달 및 비즈니스 매칭 촉진 등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권고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제7조)	•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각국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공급망 교란시 참여국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협력망 역할 담당 •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 추진 • 잠재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과거 경험·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교란에 대비
노동권 자문기구 (제8조)	• 노동권 증진을 통해 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복원력 제고 •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우려 파악 및 권고 → 공급망 위원회 보고 • ILO와 협의하여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에 관한 분야별 기술보고서 작성
개별사업장 노사문제 대응 (제9조)	• 각국은 개별사업장 노사문제 접수창구 설치 • 접수국은 접수된 주장을 검토하여 사업장 소재국과 비공개 협의 • 사업장 소재국은 주장 검토 및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 참여 등 노력

조항	주요 내용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파악 (제10조)	• 각국의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파악을 위한 기준(안)* 제시 * 결핍이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경제적 혼란에 미치는 영향, 단일 지역·국가에 대한 의존도, 잠재적 운송제약 등 지리적 요인, 대체 공급자 이용가능성, 국내 생산능력 등 • 역내 협력 대상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선정 → 공급망 위원회에 통보(발효 120일내)
공급망 취약성 점검 및 대응 (제11조)	• 정량적 증거에 기반 공급망 취약성·수입의존도·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제공 • 기업 동의 하 가능범위 내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관련 기업 정보 교환 • 핵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협력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제12조)	•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시 긴급회의 개최 (요청 15일 이내) • 회의 요청국은 교란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여타국은 공동 대응 지원* 노력 * (예) 유사교란 극복사례 공유, 비즈니스 매칭 지원, 대체 운송경로 발굴, 부족 상품의 생산증대 장려, 과도한 가격 판매 방지 노력 및 사재기 억제
비밀유지(제13조)	• 당사자가 제공한 협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IPEF 공급망 협의체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원칙
정보공개(제14조)	• 협정은 각 당사자의 법에 반하거나, 비밀 영업정보를 드러내거나, 공익에 반하게 될 정보 등을 공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안보 예외(제15조)	• 국제평화 또는 안보이익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예외 인정
이행(제16조)	•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 협정 이행
와이탕이조약(제17조)	• 뉴질랜드 마오리족에 대한 특칙 규정
WTO 의무(제18조)	• WTO 의무와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음
협의(제19조)	• 다른 당사자의 협정 이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 → 미해결시 회신 후 60일내 협의 개시 • 최대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노력
접촉선(제20조)	• 공식 의사소통 담당할 접촉선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
발효(제21조)	• 최소 5개 원협상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대리인 지정(제22조)	•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자도 협정 발효 1년까지 각 IPEF 협의체에 참여할 대리인 지정 가능
탈퇴(제23조)	•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3년 후 기탁처에 서면 통보를 통해 탈퇴 가능
개정(제24조)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협정 개정 가능
가입(제25조)	• 모든 국가 및 개별 관세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협정 가입 가능
기탁처(제26조)	• 미국을 공급망 협정 기탁처로 지정
일반검토(제27조)	• 협정의 개정과 개선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일반검토 수행

붙임 3 IPEF 관련 주요 참고사항

❶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무엇인가요?

A.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참여하여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❷ 우리 정부는 IPEF에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A. 현재 글로벌 통상질서는 공급망 재편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PEF는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협력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높은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을 가진 나라로서, IPEF에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❸ IPEF 협상은 끝난건가요?

A. IPEF는 '22.5월 출범하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출범 1년만인 금년 5월 공급망협정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머지 3개 분야에서도 금년 하반기 추가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❹ IPEF 공급망협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IPEF 공급망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총 27개조로 구성된 공급망협정은 크게 공급망 복원력·안정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개별적 노력사항과 14개국의 집합적인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정 운용을 위한 협의·발효·가입과 같은 제도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❺ 공급망협정이 발효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원부국과 기술선진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로서, 공급망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위기시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신속하게(15일 이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기술 협력,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민간기업간 매칭, 물류 인프라와 통관절차 개선, 공급망 병목점 파악 등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장벽을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공급망 관련 조치에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60일 이내)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❻ 공급망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A.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이 강조되면서 노동 관련 사안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망협정에도 노동관련 규범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노동 관련 규범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기존 통상협정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본 협정에서 노동과 관련한 내용의 판단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나요?

A.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비준 동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내 협의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동의 필요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❽ 예상발효시점은 언제인가요?

A. 14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인 만큼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정문상 발효시점은 14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정부는 공급망협정이 가급적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